



**Department of
Education**

Chancellor Richard A. Carranza

2019년 6월

**훈육 규정 변경 개요
K-5 학년 및 6-12 학년 대상**

NYC 교육청(NYCDOE)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우리 학교들이 안전하고 안정되며 지원적인 교육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공동체 구성원—교사, 학생, 행정가, 학부모, 카운셀러, 소셜워커, 안전요원, 관련 서비스 제공자, 카페테리아, 청소 담당 및 버스 직원들—은 서로를 상호 존중할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문서의 목적은 K-5 학년 및 6-12 학년 훈육 규정의 제안된 변경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 내용은 NYCDOE가 2018-19 학년도에 받은 지속적인 피드백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NYCDOE는 계속해서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추가의 피드백을 받아 변경 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상세한 변경 내용은 추후 공고될 것입니다.

NYCDOE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 정학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들을 교실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학업적 성공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공동체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 훈육 규정은, 수퍼인텐던트(교육장) 정학을 받은 학생을 나이와 위반행위의 죄질에 따라 최대 1 학년도 동안 학교 밖의 대안 학습 장소(K-5 학년 대상)나 대안 학습 센터(ALC: 6-12 학년 대상)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7-18 학년도의 경우, 수퍼인텐던트 정학의 평균 기간은 18.7 수업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학 기간과 그 이후 행동의 긍정적 변화 간에 강력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 연구로 입증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안 학습 장소 및 ALC에서도 학업 프로그램을 풀 스케줄로 제공하는 하나, 학생들이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벗어난 다른 장소에 배정되면 수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 내용은 학생들을 되도록이면 교실에 남아 있게 하고, 정학으로 인한 수업의 변동을 최소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 및 학교 커뮤니티는 이러한 변경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NYCDOE는 내셔널 유니버시티 시스템의 Sanford Harmony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사회-정서 학습(SEL) 커리큘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중, 고등학교에는 회복적 사법(RJ)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파악하고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교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처함에 있어, 학생들이 스스로의 잘못에서 배우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훈육적 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제안된 변경 내용 개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육 조치, 지원 및 중재에 더 많은 옵션을 제공.
 - a. 회복 수단의 한 가지 유형으로서 재진입 서클(Re-entry Circle)을 포함. 재진입 서클이란 학교로 복학하는 학생을 공식적으로 환영하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b. 괴롭힘, 따돌림, 협박 등의 잘못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중재의 한 가지인 개별화 지원 계획(ISP) 추가.
 - c. 일부 규정 위반에 대응하는데 적합한,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포함시킴으로써 훈육 조치 범위를 확장

2. 정학으로 인한 수업의 중단을 최소화. 수퍼인텐던트 정학이나 학교장 정학으로 인하여 상당 기간동안 학생을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교육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훈육 규정에서는 학교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수업 중단을 최소화 하고, 교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훈육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퍼인텐던트 정학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사건, 또는 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20 수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간의 정학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20 수업일을 초과할 경우 학교 및 청소년 개발 담당실 (Office of Safety and Youth Development)의 씨니어 이그제큐티브 디렉터, 또는 교육감 지정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훈육규정이 기존의 NYCDOE 정책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학생 권리 장전 및 의무에 학생의 권리가 학생들의 성정체성과 일치하도록 이름과 대명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고, 화장실과 라커룸을 성정체성에 맞게 사용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경.

4. 괴롭힘에 관한 정보 업데이트.

- a. 본 규정에서는 어떤 행위가 반드시 반복되어야만 괴롭힘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b. 학부모와 학생들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할 방법에 관한 추가 정보 포함.

5. 기타 중요한 내용 변경.

학생의 존엄, 존중 및 책임 있는 행위는 안전하고 지원적 학교 환경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 a. 전인교육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사명 내용개정.
- b. 훈육 규정의 말미에 나오는 학생 권리장전 및 의무를 더 앞쪽 섹션으로 이동.